

2025년도 제 1 차

전학 및 재취학 전형 계획



꿈이있는미래
영훈국제중학교

2025. 01.

영훈국제중학교

Young Hoon International Middle School

본 전학 및 재취학 전형 계획은 “영훈국제중학교 전학 및 재취학 전형 규정”, “2025학년도 영훈국제중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 중학교 전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계획”, “2024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2024학년도 국제중학교「사회통합전형」 추진 계획”에 따르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에 근거합니다.

I. 모집 인원

학 년	구 분	모집인원	비 고
1학년 (2025학년 기준 2학년 진급)	일반전형(전학 및 재취학 일반귀국자)	1명	
	사회통합전형(전학 및 재취학 일반귀국자)	2명	
	계	3명 이내	
2학년 (2025학년 기준 3학년 진급)	일반전형(전학 및 재취학 일반귀국자)	2명	
	사회통합전형(전학 및 재취학 일반귀국자)	1명	
	계	3명 이내	

※ 모집 학년 및 인원은 **2025년 1월 7일** 기준이며, 전학 및 재취학 전형 일정이 진행되는 중 결원이 추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집학년 및 인원’을 추가 공고할 예정입니다.

II. 지원 자격

1. 전학

-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 또는 국내 중학교(학력인정 대안학교 포함) 재학 중 부모와 함께 학생의 거주지가 서울특별시로 이전된 자.

※ 전 가족이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는 <참고 1>에 의한 사유로 함.

2. 재취학

가. 특례귀국자(정원외) : 해외에서 귀국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전학 및 재취학 처리규정에서 정한 수학(修學) 연수(年數)에 부합하는 자로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준하는 자 (단, 중학교 과정을 한 학기 이상 수학한 자)

나. 일반 귀국자 : 해외에서 귀국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전학 및 재취학 처리규정에서 정한 수학(修學) 연수(年數)에 부합하는 자로서 가항에 해당 되지 않는 자

다. 면제.유예.정원외 학적 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로서 부모와 함께 학생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3. 사회통합전형

- 위의 1항 또는 2항에 해당하는 자 중,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에 명시된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자

가. 사회통합전형 유형 및 지원 자격

전형 구분	지원 자격
기 회 균 등 전 형 (1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근거하여 주민센터에 등록된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4)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대상자로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일 경우 보훈자 자녀 '정원 외'로 지원 5)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6)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의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7)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에 한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회의록 제출, 추천위원회의 의견서 작성 및 첨부
사회다양성전형 지원 자격 제한 (2, 3 순위 모두 해당)	
사 회 다 양 성 전 형	<p>2024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자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가입자'는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의 부모(※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평균 금액 합산액이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 재산세 과세내역 확인 불필요 - '직장 가입자 및 혼합 가입자'는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의 부모(※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평균 금액 합산액 및 2024년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합산액(연간) 두 조건 모두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참고자료 12 참조) ※ 직장 및 혼합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소득월액(건강)"을 포함한 '고지금액'을 의미 ※ 장기요양보험료 및 연말정산금액(분할)납부청구액'은 합산에서 제외 ※ 재산세(주택분) 과세금액이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주택 과세 합산금액'을 의미 ※ 전국에 소유한 모든 주택(아파트)에 대한 과세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토지, 상가 등에 대해 과세된 재산세는 미포함
	<p>2 순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을 인정함.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부 또는 모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재한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3) 지원 당시 「관할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이외 소년·소녀 가장 또는 조손가족의 자녀 5)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6) 순직군경, 순직소방관,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 7)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족의 자녀(자녀 모두 지원 가능)
	<p>3 순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제5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경우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 2) 특수직업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 이상 재직 중인 중령 이하 군인 자녀 - 12년 이상 재직 중인 경감 이하 경찰(해양경찰) 자녀 - 12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 시·도 또는 군·구 소속으로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의 자녀

Ⅲ. 전형 방법

1. 전형별 지원 자격이 있는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산 추첨하여 선발한다.
2. 합격취소 또는 미등록, 추가 전출 (면제 혹은 유예 포함)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전형별로 일정 인원을 전산 추첨하여 예비 합격자로 선정한다.
3. 예비합격자 인원은 전학 및 재취학 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전형료
 - 가. 금액: 3,500원
 - 나. 서류 제출 시 현금 납부

Ⅳ. 전형 일정

구 분	일 자	장 소
홈페이지 모집 공고일	2025.01.15.(수)	홈페이지
서류 접수	2025.02.10.(월) 09:00 ~ 16:00 2025.02.11.(화) 09:00 ~ 16:00	1층 회의실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서류 검토 작업	2025.02.10.(월) 09:00 ~ 16:00 2025.02.11.(화) 09:00 ~ 16:00	1층 회의실 (서류 접수 시 서류 검토)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전산추첨	2025.02.12.(수) 16:00	오디토리움 (희망자 참여)
최종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2025.02.12.(수) 전산추첨 이후	홈페이지
합격자 등록 안내 및 학교생활 안내	2025.02.13.(목)	본교 교무실
합격자 등록	2025.02.13.(목) ~ 02.17.(월) 09:00 ~ 16:00	등록금 납부
합격자 서류 제출	등록 안내 시 공지	제 1 교무실 교무행정사

※ 추첨 전 추가적인 결원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에 공고

※ 전형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서류 검토과정 및 기한내 서류 제출 등 과정의 필요성으로 서류접수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본교1층)

V. 제출 서류

1. 일반전형

가. 전학

순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본교 홈페이지 양식 활용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2	전학/재취학 원서	본교 홈페이지 양식 활용
3	주민등록등본	전 가족이 등재된 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4	전학용 재학증명서	현재 재학 중인 중학교에서 7일 이내 발급
5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교 홈페이지 양식 활용

※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발급한 서류여야 함

나. 일반 귀국자 재취학

순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학적기록표 포함)	본교 홈페이지 양식 활용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2	전 학 / 재 취 학 원 서	본교 홈페이지 양식 활용
3	주 민 등 록 등 본	귀국일자 이후 발행한 것 (전 가족이 등재된 등본)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참고 1> 을 참조하여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
4	외 국 학 교 모 든 학 년 재 학 증 명 서 및 성 적 증 명 서	성적증명서는 학기별로 제출,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외국학력인정학교 ('교육부 홈페이지 - 정책 - 초·중·고 교육'에 탑재된 파일 참조)인 경우 해당 화면 출력물 제출. -홈페이지 미 탑재학교는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재외공관 경우 증명
5	국 내 최 종 학 교 정원외관리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국내 최종 재학학교에서 발급
6	출 입 국 사 실 증 명 서	학생의 출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7	개 인 정 보 활 용 동 의 서	본교 홈페이지 양식 활용
8	국 내 최 종 학 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학하는 경우에만 제출
9	예 방 접 증 증 명 (확인) 서 류	해외 거주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수첩을 관할 보건소에 방 문제출하여 전산등록 요청

※ 8번-9번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 서류미비시 접수불가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발급한 서류여야 함

2. 특례귀국자 전형

순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학적기록표 포함)	본교 홈페이지 양식 활용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2	전 학 / 재 취 학 원 서	본교 홈페이지 양식 활용
3	주 민 등 록 등 본	귀국일자 이후 발행한 것 (전 가족이 등재된 등본)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수 없는 경우 <참고 1>을 참조하여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
4	외 국 학 교 모 든 학 년 재 학 증 명 서 및 성 적 증 명 서	성적증명서는 학기별로 제출,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외국학력인정학교 (교육부 홈페이지 - 정책 - 초·중·고 교육'에 탑재된 파일 참조)인 경우 해당 화면 출력물 제출 -홈페이지 미 탑재학교는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5	국 내 최 종 학 교 정 원 외 관 리 증 명 서 또는 재 학 증 명 서 또는 졸 업 증 명 서	국내 최종 재학학교에서 발급
6	출 입 국 사 실 증 명 서	출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부, 모, 학생)
7	재 외 국 민 등 록 부 등 본	체류기간확인서도 가능
8	개 인 정 보 활 용 동 의 서	본교 홈페이지 양식 활용
9	예 방 접 종 증 명 (확인) 서 류	해외 거주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수첩을 관할 보건소에 방문 제출하여 전산등록 요청
10	국 내 최 종 학 교 학 교 생 활 기 록 부 출 력 물	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학하는 경우에만 제출
11	제 적 등 본	순수외국인은 제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나 가족관계입증서류
12	국 내 거 소 사 실 증 명 서	국내주민등록이 말소된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13	재 외 국 민 등 록 부 등 본 또는 체 류 기 간 확 인 가 능 한 증 명 서 류	외국 체류기간 명시(재외공관장, 외교부 영사 서비스과)
14	유 치 과 학 기 술 자, 교 수 요 원 의 정 부 초 청 또는 추 천 서 사 본	
15	제 3 국 수 학 인 정 서	
16	외 국 인 등 록 사 실 증 명 서	외국인, 한국국적이 상실된 외국국적자
17	북 한 이 탈 주 민 등 록 확 인 서	
18	학 력 확 인 서	
19	교 육 보 호 대 상 자 증 명 서	

- ※ 9번-19번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 ※ 서류미비시 접수불가
-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발급한 서류여야 함

3. 사회통합전형

가. 기회균등전형

구 분		제 출 서 류	발 급 처
공통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본교 양식
		전학/재취학 원서	본교 양식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참고 1>를 참조하여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	구청, 동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대상 - '부' 또는 '모' 기준 : 다문화가족 자녀, 다자녀 가족 - '자녀(지원자)' 기준 : 한부모가족 자녀	구청, 동주민센터
		전학용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학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교 양식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	본교 양식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수급자증명서 1부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1부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단독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에서도 발급 가능	구청, 주민센터 학교 정부24_홈페이지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근로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1부	주민센터, 복지로_홈페이지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주민센터, 복지로_홈페이지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1부	주민센터, 복지로_홈페이지
	차상위 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주민센터, 복지로_홈페이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공단_홈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주민센터, 정부24_홈페이지, 복지로_홈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할 보훈지청, 정부24_홈페이지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기준중위소득50%이하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1부	구청, 동주민센터, 해당 중학교
	기준중위소득60%이하	· 교육비지원확인서 1부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의 자녀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임을 반드시 확인 후 추천 (NEIS에서 확인 가능)	해당 중학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자 (「아동복지법」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1)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 1부 2)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 폐업 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 소득 원천 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 과세 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1) 학교장 추천서 1부 <서식10>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회의록 1부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천위원회 의견서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공단_홈페이지

※ 서류미비시 접수불가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발급한 서류여야 함

나. 사회다양성전형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본교 양식
	전학/재취학 원서	본교 양식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참고 1>를 참조하여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	구청, 동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대상 - '부' 또는 '모' 기준 : 다문화가족 자녀, 다자녀 가족 - '자녀(지원자)' 기준 : 한부모가족 자녀	구청, 동주민센터
	전학용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학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교 양식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	본교 양식
지역 건강보험료 해당자	<부, 모 모두 제출> 1)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최근 6개월 평균 고지액)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공단 홈페이지
직장 건강보험료 해당자 및 혼합해당자 (지역+직장)	<부, 모 모두 제출> 1)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최근 6개월 평균 고지액) 3)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연간)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으로 발 급 받아 제출(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 불가) ※ 주택을 기준으로 전국단위로 발급받아야 하며 주택이 있 는 지역의 과세증명서와 주택 미소유지역에 과세 사실이 없음이 명시된 과세증명서 모두 발급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공단 홈페이지, 구청,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부 또는 모가 귀화한 경우 귀화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 부 또는 모가 외국 국적자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사본 1부	구청, 동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1부	구청
특수교육 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통지서사본 (원본대조필) 1부	특수교육지원센터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사실관계 확인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1부	구청, 동주민센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1부	구청, 동주민센터
순직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의 자녀	· 순직 군경, 순직 소방관, 순직 교원, 순직 공무원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해당기관
다자녀가족 (3자녀 이상) 자녀	· 추가서류 없음	
한부모가족 자녀	· 자녀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부	구청, 동주민센터
특수직업 종사자의 자녀	재직증명서 (재직기간 명시) 1부	해당기관

※ 서류미비시 접수불가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발급한 서류여야 함

<참고 1> 부·모와 학생의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제출 서류

가)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지방에 되어 있는 경우

- (1) (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1부
 - (3) 재직증명서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기타 증빙서류
- ※ 단, 제출서류 (2)와(3)의 지역(지방)은 동일 지역(지방)이어야 함.

나)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 (2)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학생과 친권자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1) 2007년 12월 31일 까지 신고한 경우 : (학생)제적등본 1부
 - (2)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경우 : (학생)기본증명서 1부 및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1부
- ※ 학생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 : 전학동의서 1부 (친권자 자필서명 기재)
- ※ (학생)기본증명서 : 친권자 확인 가능하도록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기본증명서 (특정-친권 · 후견)으로 발급

라)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1) 2007년 12월 31일 까지 신고한 경우 : (학생)제적등본 1부
- (2)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경우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마)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 (1) (부 또는 모)가족관계증명서 1부
 - (2)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전세금 보호를 위해 거주하는 곳) 원본 및 사본 1통 (원본은 대조 후 반환)
- ※ 단, 원본을 은행에 맡긴 경우 해당 은행에서 '원본대조필' 받은 계약서 사본 제출
- (3)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바)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1) 직전 학년 이전부터 별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 등재된 것) 각 1부
- (2) 당해 학년 이후부터 별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 등재된 것) 각 1부,
담임의견서(학교장 확인 날인)

사)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

-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아) 무연고 학생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

- 아동양육시설 입소 확인서

자) 학생의 직계존속 중 1인이 세대주가 될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제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또는 학교장이 확인 날인한 담임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음.

<참고 2>

1. 사회다양성전형의 필수 요건

[2024년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기준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 원)			재산세납부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11,316	162,847	214,007	784,320
3인	271,291	233,543	277,236	1,180,560
4인	336,105	303,332	348,552	1,570,320
5인	397,093	373,366	422,318	1,941,360
6인	453,848	433,430	498,289	2,295,600
7인	498,289	478,514	543,979	2,639,760
8인	543,979	524,772	589,232	2,984,160
9인	589,232	567,285	659,065	3,328,560
10인	659,065	625,932	773,009	3,672,720

*표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분류	내용
지역가입자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의 부모(※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평균 금액 합산액이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 재산세 과세내역 확인 불필요 ※ '지역건강보험료 전환자 중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직장가입자 혼합가입자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의 부모(※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평균 금액 합산액 및 2024년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합산액(연간) 두 조건 모두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 주의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란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을 의미
 - ※ 직장 및 혼합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소득월액(건강)"을 포함한 '고지금액'을 의미
- 장기요양보험료 및 연말정산금액(분할)납부청구액은 합산에서 제외
- 건강보험 연말정산금액을 분할납부한 경우 개인별 고지 산출내역(가입자별 부과내역)을 제출해야 함
(발급방법 : 재직중인 사업장 업무담당자에게 신청, 공단 전산에 등록된 해당 사업장 팩스번호로만 전송 가능)
- 부 또는 모가 피부양자로서 자격확인서의 자격취득일이 최근 1년 이내 변동이 있을 경우(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던 부 또는 모가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고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피부양자의 최근 1년간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주의 2. 재산세(주택) 과세금액(연간)

- 재산세(주택분) 과세금액이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주택 과세 합산금액'을 의미
- 전국에 소유한 모든 주택(아파트)에 대한 과세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토지, 상가 등에 대해 과세 된 재산세는 미포함
- 지방세 부과된 지역 및 부과되지 않은 지역 증명서 각각 발급해야 함
(발급방법 : 인터넷 정부24에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직접 주민센터(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하여야 함)

2. 가구원수 산정 방법 및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외)조부, (외)조모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기혼인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포함(※ 최소 원서 접수 6개월전부터 주민 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은 경우 미포함.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친부 또는 친모)를 가구원수 산정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친부모와 친모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확인하여 합산

③ 산정 및 적용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시 휴직 전 납부된 건강보험료로 산정

※ 입학 지원서 제출 당시 복직한 경우 복직 후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산정

○ (적용)

- 부,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4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4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6만2천원)

VI. 기타 사항

1. 기본 사항

- 가. 입학 전형의 방법과 내용, 전형기준 및 입학사정에 관하여 본 전형 요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름.
- 나.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다. 본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자율화되어 있음.

2. 원서 관련 사항

- 가.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는 입학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수집·이용·제공되며 원서접수 시 이러한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여야 원서를 접수할 수 있음.
- 나. 원서접수 시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사진(3X4cm,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용 사진)을 준비해야 함.
- 다. 지원자 또는 보호자 연락처, 주소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3. 등록 관련 사항

- 가. 합격자 발표는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http://younghoon.ms.kr/>)에서 확인해야 하며, 합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나. 반드시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합격을 취소함.
- 다. 합격자 등록 기간 중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록 포기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함.
- 라. 미등록자 및 합격 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전형별 예비합격자로 충원하며, 개별 통지함.

4. 기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을 배제하거나 취소함.

- 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 나. 불법,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입학한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함.

VII. 입학관련 문의

주소 : [우 0121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3가길 19 영훈국제중학교
전화 : (02) 970-4602, 4620 / FAX : (02) 980-7209
홈페이지 : <http://younghoon.ms.kr/>

Address : Young Hoon International Middle School
[01211] Dobong-Ro 13ga gil 19, Gangbuk-ku, Seoul, KOREA
Phone : 82-2-970-4602, 4620 / Fax : 82-2-980-7209
Website : <http://eng.younghoon.ms.kr/>

